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54-1번지 일원, 1단지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25층, 5개동 총 4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4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87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민 영 주 택	84.5361A	84A	84.5361	28.6632	113.1993	44.6481	157.8474	310
	84.8546B	84B	84.8546	29.1557	114.0103	44.8163	158.8266	85
	84.3883C	84C	84.3883	29.2466	113.6349	44.5699	158.2048	25
계								420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구분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84A	12	5	4	2	3	1	2	1	10	4	31	13
84B	3	1	1	1	1	0	0	0	3	2	8	4
84C	1	0	0	0	0	0	0	0	1	1	2	1
합계	16	6	5	3	4	1	2	1	14	7	41	18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가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2019. 4. 25. (목)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http://megacity.iusell.co.kr/)
• 견본주택 개관(예정)일	2019. 4. 26. (금) (예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번지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19. 4. 30. (화) (예정)	아파트투유 인터넷청약(www.ap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첨자 및 동 호수발표	2019. 5. 14. (화) (예정)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인터넷청약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신청 (서류제출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점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의 구성원(「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으로 한정한다)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세대"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구분	내용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52 656 1428 842"> <thead> <tr> <th>구분</th> <th>화성시 및 경기도</th> <th>인천광역시</th> <th>서울특별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p>※ 추천기관</p> <table border="1" data-bbox="252 1021 1428 1529">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거주지역 기준 : 경기도청/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td> </tr> <tr> <td>장기복무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북한이탈주민</td> <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td> <td>통일부 하나원</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거주지역 기준 : 경기도청/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거주지역 기준 : 경기도청/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APT2you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등 유형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배정량의 40% 선정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예비입주자 포함)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전산추첨('18.08.0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금융결제원 수행)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일반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 • APT2you 홈페이지에서 접수(서류제출 없음)하여야 함. 다만,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곤란한 청약자는 견본주택(10:00~14:00, 자격증명 및 구비서류 제출)에서 신청 가능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 공급만 당첨으로 인정 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동일세대에서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 노부모 등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가구 수 및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확정하고 특별공급 접수일 전에 동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금융결제원에 통지 • 예비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위는 부여하지 않음(타 유형특공 미달시 예비자가 당첨될 수도 있음) •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 •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는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기관예비자 포함)에게 공급 •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배정 시 일반공급 예비 지위는 무효 - 특별공급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예비 선택불가 - 다만, 특별공급 예비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9.4.11.(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 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화성 우방 아이유셀 홈페이지(http://megacity.iusell.co.kr/)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는 <u>해당대상자(예비자 포함) 명단을 2019.04.26.(금) 11시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u>

Ⅲ.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건본주택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
- 분양홈페이지 : <http://megacity.iusell.co.kr/>
- 분양문의 : 1522-2529

#별첨1. 사업지 입지



#별첨3. 조감도 (좌 - 2단지 / 우 - 1단지)



#별첨4. 단지 배치도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세부 내역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추천대상자)

- 대상세대 : 총 41세대

구분	국가유공자등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84A	12	(5)	4	(2)	3	(1)	2	(1)	10	(4)	31	(13)
84B	3	(1)	1	(1)	1	(0)		(0)	3	(2)	8	(4)
84C	1	(0)		(0)		(0)		(0)	1	(1)	2	(1)
합계	16	(6)	5	(3)	4	(1)	2	(1)	14	(7)	41	(18)

-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지역별 배정 세대수

구분	84A		84B		84C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경기도청	6	(2)	2	(1)	1	(1)	9	(4)
서울시청	2	(1)	1	(1)			3	(2)
인천시청	2	(1)					2	(1)
합계	10	(4)	3	(2)	1	(1)	14	(7)